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256570 판결 [건물명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시그니처

담당변호사 손한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12.

판 결 선 고 2024. 4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10,629,397원 및 2024. 3. 6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,51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,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신혜원

별지